

제333회 정례회
운영상황결과보고

(2016. 6. 7 ~ 6. 21)



전라북도의회
(의사담당관실)

제 333회 정례회

(2016. 6. 7 ~ 6. 21)

목 차

제333회 정례회

I. 집회 및 의사일정

1. 공고 및 집회
2. 회기 및 운영
3. 의 사 일 정

II. 의안접수 및 처리

1. 접 수 현 황
2. 처 리 현 황

III. 민원 접수 및 처리

1. 접 수 현 황
2. 처 리 현 황
3. 위원회별 처리현황
4. 주요 처리사례

IV.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

1. 2015년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
2. 2015년 위원회별 요구상황
3. 제10대 의회 의원 요구 및 제출현황
4. 제10대 의회 위원회별 요구상황

I . 집회 및 의사일정

1. 공고 및 집회

- 집회 공고 : 2016. 6. 1(수)
- 집회 일자 : 2016. 6. 7(화) 14:00
- 집회 사유
 -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
 -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의
 - 조례안 및 계류의안 등 안건 심의
 - 상임위원회별 활동

2. 회기 및 운영(제10대)

- 회 기 : 2016. 6. 7. ~ 6. 21(15일간, 2016년 : 63일, 총누계 342일)
- 개의일수
 - 본회의 : 4 (연누계 : 16, 총 누계 62)
 - 상임·특별위원

구 분	계	운 영	행정자치	환경복지	산업경제	문화관광 건 설	교 육	특 별
제333회 정례회	16	1	2	2	2	2	2	5
2016 년도	81	7	16	12	12	11	13	10
총 누 계	582	41	121	80	90	101	113	36

3. 의사일정

○ 본회의

일시	부 의 안 건	비고
2016. 6.7(월) 14:00	<p style="text-align: center;">《 제1차 본회의 》</p> <p>○ 개회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3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3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도지사과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2016. 6.9(목) 10:00	<p style="text-align: center;">《 제2차 본회의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문일답 : 양용모 의원 - 일괄질문·일괄답변 : 양용호 의원, 최은희 의원, 송지용 의원, 국주영은 의원 	
2016. 6.10(금) 10:00	<p style="text-align: center;">《 제3차 본회의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문일답 : 장학수 의원 - 일괄질문·일괄답변 : 정호운 의원, 최진호 의원, 조병서 의원, 송성환 의원 2.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본회의 휴회의 건 	
2016. 6.21(화) 14:00	<p style="text-align: center;">《 제4차 본회의 》</p> <p>○ 5분 자유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영일 의원, 이해숙 의원, 최인정 의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7. 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8. 영유아 전자파 보호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9. 전라북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10. 전라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전라북도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 13. 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전라북도 어장정화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전라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16.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시공을 위한 조례안 	

일시	부 의 안 건	비 고
	17.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2015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9. 2015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 지역무역향 몰락시키는 향만 카보타지 시행계획안 철회 촉구 결의안 21. 20대 국회, 전북현안 해결 촉구 결의안 22.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폐과계획 반력촉구 건의안	

○ 상임·특별위원회

위원회	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운영위원회	6. 7(화) 11:0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3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결정의 건 -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의 건 -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시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의 건 - 전라북도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심사의 건 - 전라북도의회 회의록작성 등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 내규안 심사의 건 -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행정자치위원회	6. 13(월) 10:0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관리실 소관 의안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영유아 전자파 보호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 전라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공보관 소관 의안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6. 14(화)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본부 소관 의안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감사관 소관 의안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공무원교육원 소관 의안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협력국 소관 의안 심사 -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환경복지 위원회	6. 7(화) 09:0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의정활동 - 전주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방문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안 심사 -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의안 심사 -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의안 심사 -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6. 8(수) 10:0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녹지국 소관 의안 심사 -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전라북도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 전라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경제 위원회	6. 8(수) 10:0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산업국 소관 의안 심사 -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전라북도 청년 기본 조례안 - 전라북도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 ○ 농업기술원 소관 의안 심사 -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농축수산물식품국 소관 의안 심사 -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전라북도 어장정화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13(월) 14:0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의정활동 - 전라북도 축산위생연구소(장수) - 무주 내창마을(마을기업 육성 사업장) 	
문화건설 안전위원회	5. 8(수) 10:0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의안 심사 -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 의안 심사 -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전라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민안전실 소관 의안 심사 -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6. 14(화) 10:0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의정활동 - 정읍 태안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공사 ○ 의원연구단체 세미나(순창) 	
교 육 위 원 회	6. 13(월)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의안 심사 - 201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5. 14(화) 10:0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속기관 의안 심사(12개 기관) - 201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교육지원청 의안 심사(14개 기관) - 201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의안 심사 -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정보화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시공을 위한 조례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6. 8(수) 14:0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 실국별 재심사 ○ 계수조정, 심사의결, 심사보고서 작성 	
	6. 15(수) 14:0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 제안자 : 행정부지사 - 검토보고 : 운영수석전문위원 ○ 전라북도 부서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심사 - 의회사무처, 감사관, 공보관, 기획관리실, 대외협력국, 복지여성보건국, 자치행정국 	
	6. 16(목) 10:00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 도민안전실, 소방본부, 새만금추진지원단, 경제산업국 - 농업기술원, 농축수산물국, 문화체육관광국, 건설교통국,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환경녹지국 	
	6. 17(금) 10:00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심사 - 제안자 : 부교육감, -검토보고 : 운영수석전문위원 ○ 전라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심사 - 감사담당관, 행정국,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 - 정책공보담당관, 교육국 	
	6. 20(월) 10:00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진부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심사, 심사의결, 심사보고서 작성 	

II. 의안접수 및 처리

1. 접수현황

○ 접수기관 및 의안별

제333회 (2016. 6. 21기준)

구 분	계	조 례				규칙	규정	승인 동의	일반 의안	예산 결산	건의 결의	기타 의안	
		소계	제정	개정	폐지								
총 계	금 회	22	13	7	6		2			2	4	1	
	누 계	757	453	191	253	9	10	1	151	27	85	30	
의 회	소계	금회	14	7	3	4		2			4	1	
		누계	399	270	163	107		10	1	5		85	28
	의원	금회	14	7	3	4		2				4	1
		누계	366	270	163	107		9		3		74	10
	위원회	금회											
		누계	33					1	1	2		11	18
도지사	금 회	7	6	3	3					1			
	누 계	258	137	23	108	6			106	14		1	
교육감	금 회	1								1			
	누 계	100	46	4	39	3			40	13		1	

2. 처리현황

○ 총 괄

제333회 (2016. 6. 21기준)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계 류 (미료, 미심사)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원안	수정	대안						
총 계	금회	22	25	19	5				1	1	
	누계	757	740	620	102		12		6	17	
조 례 안	소계	금회	13	15	10	4					1
		누계	453	438	349	82		2		3	16
	의회	금회	7	9	8	1					
		누계	270	256	206	47				3	14
	도지사	금회	6	6	2	3				1	1
		누계	137	136	103	31		1		1	1
교육감	금회										
	누계	46	45	40	4		1			1	
규 칙 안	금회	2	2	2							
	누계	10	10	10							
규 정 안	금회										
	누계	1	1	1							
승인동의안	금회										
	누계	151	149	134	6		8		2	1	
일 반 의 안	금회										
	누계										
예산결산안	금회	2	3	2	1						
	누계	27	27	12	13		2				
건의결의안	금회	4	4	4							
	누계	85	85	84	1						
기 타 의 안	금회	1	1	1							
	누계	30	30	30							

○ 위 원 회

구 분	회 부										처 리				미 료	미 심 사
	계	조 례	규 칙	규 정	승 인 동 의	일 반 의 안	예 산 결 산	건 의 결 의	기 타 의 안	계	가 결		부 결	철 회		
											원 안	수 정				
총 계	금 회	17	13	2			2		1	21	16	4			1	
	누 계	652	451	10	1	47		27	13	4	636	516	102	13	5	17
운 영 위 원 회	금 회	3	1	2						3	3					
	누 계	39	26	10	1			2		38	37	1			1	
행 정 자 치 위 원 회	금 회	5	4					1		5	4	1				
	누 계	128	103			22		2	1	127	110	16	1		1	
환 경 보 지 위 원 회	금 회	1	1							3	2	1				
	누 계	99	87			10		2		96	76	16	1	2	3	
산 업 경 제 위 원 회	금 회	3	3							3	2	1			1	
	누 계	94	51			40		3		91	75	10	6		2	
문 화 관 광 건 설 위 원 회	금 회	1	1					1		1	1					
	누 계	116	77			35		4		112	93	19			4	
교 육 위 원 회	금 회	2	2							2	2					
	누 계	148	106			40		1	1	142	120	17	2	3	6	
특 별 위 원 회	금 회	2						2		2	2					
	누 계	28						16	1	1	28	14	12	2		

○ 본 회 의(직접부의)

구 분	부 의									처 리				미 료	미 상 정	
	계	조 례	규 칙	규 정	승 인 동 의	일 반 의 안	예 산 결 산	건 의 결 의	기 타 의 안	계	가 결		부 결			철 회
											원 안	수 정				
총 계	금회	4						3	1	5	4	1				
	누계	105	1			5		74	25	105	102	2		1		

○ 본 회 의(의 결)

구 분	부 의									처 리				미 료	미 상 정	
	계	조 례	규 칙	규 정	승 인 동 의	일 반 의 안	예 산 결 산	건 의 결 의	기 타 의 안	계	가 결		부 결			철 회
											원 안	수 정				
총 계	금회	26	16	2			3	4	1	26	19	5		1	1	
	누계	757	453	10	1	151	27	85	30	740	620	102		1	17	

제10대 의안처리 현황

○ 기관 및 의안별<접수>

제333회 (2016. 6. 21기준)

구 분	계	조 례				규칙	규정	승인 동의	일반 의안	예산 결산	건의 결의	기타 의안
		소계	제정	개정	폐지							
총 계	757	453	191	253	9	10	1	151		27	85	30
의 회	소 계	399	270	163	107		10	1	5		85	28
	의 원	366	270	163	107		9		3		74	10
	위 원 회	33					1	1	2		11	18
전라북도지사	258	137	23	108	6			106		14		1
전라북도교육감	100	46	4	39	3			40		13		1

○ 의안 및 처리유형별

제333회 (2016. 6. 21기준)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계 류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원안	수정	대안					
총 계	757	740	620	102		12		6	17	
조 례 안	소 계	453	438	349	82		2		3	16
	의 회	270	256	206	47				3	14
	도 지 사	137	136	103	31		1		1	1
	교 육 감	46	45	40	4		1			1
규 칙 안	10	10	10							
규 정 안	1	1	1							
승 인 동 의 안	151	149	134	6		8		2	1	
일 반 의 안										
예 산 결 산 안	27	27	12	13		2				
건 의 결 의 안	85	85	84	1						
기 타 의 안	30	30	30							

전라북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5.12.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15
	의 결 일 자	2016.6.8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6.21	심 의 결 과	수정가결
이 송 일 자	2016.6.2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13.12.13)에 따라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의 시설기준이 강화되었으나, 바닥포장 및 지붕 덮개시설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시설기준임
- 따라서 일률적인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시설의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주변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방지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의 시설기준중 예외기준마련(안 제3조)
- 바닥포장과 지붕덮개시설은 “비점오염원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주변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가 정하는 “환경영향검토서”를 제출하여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음.

< 수 정 안 >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시설기준등) ① (생략)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단서에 따라 제1항제2호라목과 같은 호 마목의 시설은 다음 각 호	제3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시설기준등) ① (조례안과 같음)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단서에 따라 제1항제2호라목과 같은 호 마목의 시설은 다음 각 호

제 정 안	수 정 안
<p>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p> <p>1. (생략) 2. (생략) <신설></p> <p>제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신설></p>	<p>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침출수 발생우려가 있는 건설오니는 바닥포장과 지붕덮개 설비가 갖추어진 보관시설을 따로 설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p> <p>1. (조례안과 같음) 2. (조례안과 같음)</p> <p>제4조(토양조사)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바닥포장과 지붕 덮개시설을 갖추지 않는 중간처리업체는 연 1회 보관시설 주변의 토양오염도검사를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토양오염조사 결과가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서 정하는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토양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p> <p>③ 시장·군수는 중간처리업자가 제2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63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p> <p>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제2항에 따라 바닥포장과 지붕 덮개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되는 보관시설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허가받은 중간처리업체에 한하여 적용한다.</p>

전라북도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최인정·이해숙·장명식·강용구·송성환·정진세·정호윤·최훈열·양용호·이호근·박재완	제 출 일 자	2015.12.31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산업경제위원회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2016.6.8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6.21	심 의 결 과
이 송 일 자	2016.6.2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전라북도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특화거리 조성 등 상권 활성화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 사항을 정함
- 나.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종합관리계획 수립·시행 사항을 정함
- 다.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일정지역을 특화거리로 지정·지정 취소 등의 사항을 정함

< 수 정 안 >

제 정 안	수 정 안
전라북도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	전라북도 특화거리 및 구도심 상가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생 략) 1. (생 략) 2. “특화거리”란 구도심상가 또는 상가활성화를 위하여 시장·군수가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특화거리”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특화된 공간(상가, 거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특정목적을 위하여 시장·군수가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제 정 안	수 정 안
<p>3. 신설</p> <p>제8조(지원사업) (생 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시설, 고객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사업 2. (생 략) 3. 상권활성화를 위한 축제·문화 및 홍보행사 4. (생 략) <p><신설></p> <p><신설></p>	<p>3. “구도심 또는 원도심”이란 도심의 업무·상업·주거기능의 중심이 되었던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p> <p>제8조(지원사업)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시설, 고객편의시설의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 2. (현행과 같음) 3. 상권활성화를 위한 홍보·교육사업 4. (현행과 같음) <p>제18조(적용의 제외)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지원되는 특화거리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부칙 제3조(특화거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전라북도 구도심상가 활성화 지원 조례」 규정에 의거 지정된 특화거리는 이 조례에 의한 특화거리로 본다.</p>

전라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양성빈 의원 외 15인		제 출 일 자	2016.5.9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환경복지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5.11
	의 결 일 자	2016.6.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6.21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6.2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쾌적한 삶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전라북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내용

- 가. 온실가스의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규정(안 제2조)
- 나. 전라북도지사가 지역적 특성에 맞는 녹색성장추진계획과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규정(안 제5조)
- 다. 도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이상기상 대응 및 신소득작물 개발 등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함(안 제21조)
- 라. 도는 기후변화대응 신제품 육성, 병해충 방제기술, 신소득 작목 발굴과 이상기상에 대응한 영농 현장애로기술 지원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3조)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16.5.9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예결특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6.8
	의 결 일 자	2016.6.9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6.10	심 의 결 과	수정가결
이 송 일 자	2016.6.10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33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심사(2016.5.21.)하기로 의결하여 재심사함

□ 주요내용

- 세입

(단위: 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 총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합 계	2,794,543,387	2,706,227,172	88,316,215
이 전 수 입	2,539,777,877	2,484,650,552	55,127,325
자 체 수 입	32,665,536	28,327,768	4,337,768
차 입	145,880,808	133,170,808	12,710,000
기 타	76,219,166	60,078,044	16,141,122

- 세출

(단위: 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 총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합 계	2,794,543,387	2,706,227,172	88,316,215
유아및초중등교육	2,667,848,033	2,570,542,079	97,305,954
평생·직업교육	7,109,895	6,839,131	270,764
교육일반	119,585,459	128,845,962	△9,260,503

□ 수정안

- 가. 세입예산 : 지방교육세전입금 및 시도세전입금 총 10,034,381천원 삭감
- 나. 세출예산 : 급식시설보수 등 총 123건 11,095,708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

2015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16. 5. 10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예결특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6.15
	의 결 일 자	2016.6.1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6. 21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6. 23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2015 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전라북도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결산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현액	결 산 액	세계잉여금
세 입	2,831,111,706	2,875,351,842	2,872,057,1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 시 이 월 : 43,148,304 • 사 고 이 월 : 8,254,362 • 계 속 비 이 월 : 50,803,704 • 보 조 금 잔 액 : 4,663,462 • 순 세계 잉 여 금 : 71,555,704 합 계 178,425,536
세 출	2,831,111,706	2,875,351,842	2,693,631,624	
차 액	0	0	178,425,536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6.5.10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예결특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6.15
	의 결 일 자	2016.6.1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6.21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6.2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제13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5회계연도 전라북도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등에 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일반회계

- 세입 결산액 4조 8,528억 7천8백만원
- 세출 결산액 4조 6,441억 8천2백만원
- 차 인 잔 액 2,086억 9천6백만원
- 차인잔액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508억 2천7백만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억 8천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572억 8천8백만원임.

나. 기타특별회계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등 3개 회계)

- 세입 결산액 4,375억 7천1백만원
- 세출 결산액 4,296억 4천5백만원
- 차 인 잔 액 79억 2천6백만원
- 순세계잉여금은 차인잔액과 동일한 79억 2천6백만원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6.5.30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환경복지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6.1
	의 결 일 자	2016.6.8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6.21	심 의 결 과	수정가결
이 송 일 자	2016.6.2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전라북도 관광활성화 정책에 협력하기 위하여 관광패스 등 관련 이용자에게 시설사용료에 대한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가격차별화 정책을 통한 숙박시설 이용률을 최대화하여 도민들에게 양질의 산림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시설사용료 추가감면 가능 기간을 확대하여 시설물 이용률을 최대화하고자 함 (안 조례 제15조제1항)
- 나. 추가감면으로 인하여 변경된 시설사용료의 공고방법에 대한 항목을 신설하여 도민들이 변경사항을 알기 쉽게 하고자 함(안 조례 제15조제2항)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5조(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생 략). ② <u>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하여 징수할 때에는 인터넷 누리집 또는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u>	제15조(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개정안과 같음) ② <u>시설사용료 감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u>

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6.5.3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6.1
	의 결 일 자	2016.6.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6.21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6.2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산물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특성이 있으며,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국내산 농산물 소비는 감소 추세로 농산물 가격불안과 농가경영 불안 가중
-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전라북도 농산물 가격 차액지원, 수급조절, 홍보·관측 등의 사업 추진으로 전라북도 농업인의 안정적 농가소득 지원

□ 주요내용

- 가. 주요 농산물, 기준가격 등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 나. 전라북도 및 농업인 등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제4조)
- 다. 지원범위, 지급대상과 신청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제7조)
- 라. 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 설치와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2조)
- 마. 권한의 시장·군수 위임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바.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에 필요한 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제 출 자	백경태 의원 외 7인		제 출 일 자	2016.5.30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6.7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6.7		이 송 기 관	도지사,교육감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전라북도 의회 기본 조례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 가. 출석일시 : 2016.6. 9.(목) 10:00(제2차 본회의)
2016.6.10.(금) 10:00(제3차 본회의)
 - 나. 출석대상자 :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 다. 출석요구이유 :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6.5.30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6.1
	의 결 일 자	2016.6.13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6.21	심 의 결 과	수정가결
이 송 일 자	2016.6.2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미륵사지유물전시관, 만인의총관리사무소 국가관리 전환과 감염병 역학조사관 등 국가시책 이행을 위해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 구

- 본 청 : 12실국본부 56관과단(변동없음)
- 직속기관 : 3원 10소(변동없음)
- 사 업 소 : 13사업소 → 11사업소(△2사업소)

나. 기능조정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 전담팀 운영(안 제12조)
 - 사회복지과 내 “자활지원팀”을 “자활사회서비스팀”으로 명칭 변경
- 가축전염병 신속 대응과 가축방역기능 강화(안 제39조부터 제42조)
 - 「동물위생시험소법」 제정 시행('16.6.23)에 따른 시도별 가축방역기관 명칭 통일을 위해 “축산위생연구소”를 “동물위생시험소”로 변경

다. 정 원

- 정원의 총수 : 3,764명 → 3,757명 (△7명)

< 수정안 >

원 안	수 정 안
<신 설>	제34조의 2(하부조직 등) 서울사무소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분소를 둘 수 있으며, 분소의 명칭·위치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65조의 2(하부조직 등) 도로관리사업소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의 명칭·위치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6.5.30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6.1
	의 결 일 자	2016.6.1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6.21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6.2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전북관광패스라인 구축 사업」 전면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이용권 소지자에 대한 체험시설 이용료를 규정하고, 현행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일부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이용료 감면대상에 「전북관광패스라인 사업 이용권 소지자」 를 추가(안 제10조)
 - ※ 전북관광패스라인 사업 이용권 소지자 : 체험동별 50 ~ 75% 할인
- 나.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內 전문응급처치교육 과정 도입에 따른 이용료를 신설(안 제7조 관련 별표)
 - ※ 전문응급처치교육장 이용료 : 2,000원(도민 또는 단체 50% 할인)

전라북도 어장정화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강병진·이호근 의원 외 8인		제 출 일 자	2016. 5. 30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산업경제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6. 1
	의 결 일 자	2016.6.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6. 21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6. 2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전라북도 연안어장 정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어장정화대상수역을 “공유수면”을 우선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도지사는 어장정화선의 운영 및 관리 책임을 지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어장정화선”의 정의에서 “정화선”과 “운반선”을 명확히 구분함(안 제2조)
- 나. 어장정화대상수역을 “공유수면”을 우선으로 적용하도록 수정(안 제3조)
- 다. 어장정화선 운영계획 수립에 있어 시장·군수는 어장정화대상수역을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매년 어장정화선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수정(안 제5조)
- 라. 어장정화작업을 어장정화선의 연간운영계획에 의거해 실시하도록 수정(안 제6조)
- 마. 도지사는 어장정화선의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할 책임을 지고 선장은 업무수행을 최대한 유지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 추가(안 제6조의 2)
- 사.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규정 추가(안 제12조)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이호근 의원 외 10인		제 출 일 자	2016. 5. 3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운영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6. 1
	의 결 일 자	2016. 6. 7	심 사 결 과	원안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6. 21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6. 2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전라북도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전라북도 의회 기본 조례」에 통합되어 폐지되고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 조례에 남아있는 인용 조문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띄어쓰기, 용어순화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장 제목”을 붙여 씌(안 총칙)
- 나. 제2조제1호에서 이미 약칭을 쓴 “전라북도의회”를 삭제함(안 제3조제1항)
- 다. 본 조례에서 인용된 조문 중 폐지 또는 개정된 조문을 바로잡음(안 제8조, 안 제40조)
- 라.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항 번호”와 “본문”을 띄어 씌(안 제13조)
- 마.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의하여”를 “따라”로 수정(안 제16조)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최훈열 의원 외 10인		제 출 일 자	2016. 5. 30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운영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6. 1
	의 결 일 자	2016. 6. 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6. 21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6. 23		이 송 기 관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전라북도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전라북도 의회 기본 조례」에 통합되어 폐지되고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 조례에 남아있는 인용 조문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띄어쓰기, 용어순화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본 조례에서 인용된 폐지 조례를 새로 제정된 조례로 맞추고, 잘못된 조례 제명을 정확히 하는 한편, 목적규정의 약칭을 삭제하는 등으로 간단·명료하게 함(안 제1조)
- 나. 항 번호와 본문을 띄어 쓰고, 목적규정에서 삭제한 약칭을 살렸으며, 본 조례에서 인용된 폐지 조례를 새로 제정된 조례로 맞춤(안 제2조)
- 다.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바꾸고, 목적규정에서 삭제한 약칭을 살림(안 제4조)
- 라. 회의규칙에서 개정에 따라 인용이 잘못된 조항을 바르게 바꾸고, “규정에 의한”을 “에 따라”로 고침(안 제5조)
- 마. “당해”를 “해당”으로 바꿈(안 제8조)
- 바. “자는”을 “사람은”으로 바꿈(안 제11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송성환 의원 외 10인		제 출 일 자	2016. 5. 30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운영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6. 1
	의 결 일 자	2016. 6. 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6. 21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6. 23		이 송 기 관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전라북도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전라북도 의회 기본 조례」에 통합되어 폐지되고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 조례에 남아있는 인용 조문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띄어쓰기, 용어순화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목적규정의 약칭을 삭제하고, “관하여” 는 생략(안 제1조)
- 나. 폐지된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대신 새로 제정된 「전라북도 의회 기본 조례」로 바꿈(안 제2조)
- 다. “항 번호” 와 “본문” 을 띄어쓰고, “의 규정에 의한” 을 “에 따른” 으로 바꿈(안 제3조)
- 라. 목적규정에서 삭제한 약칭을 사용하고, 조 번호와 항 번호를 붙였으며, “이하어” 를 “따라” 로 바꿈(안 제4조)
- 마. 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에 관한 서식을 명확하게 구분(안 제12조)
- 바. 개정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에 맞게 인용 조항 정비(안 제16조, 제17조)
- 사. 잘못 인용된 조례명 「전라북도세 부과징수 규칙」을 「전라북도 도세 부과징수 규칙」으로 바꿈(안 제20조)

전라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양성빈·강용구·이도영·김종철·송지용 송성환·최영규·허남주 의원		제 출 일 자	2016. 5. 30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6. 1
	의 결 일 자	2016. 6. 13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6. 21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6. 2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전라북도의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 구축 등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도민 서비스 제공 및 민간 활용지원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빅데이터의 뜻을 정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발전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나. 빅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빅데이터책임관을 두도록 함
- 다.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라. 빅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빅데이터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전라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송성환최은희 의원 외 15인		제 출 일 자	2016. 5. 30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6. 1
	의 결 일 자	2016. 6. 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6. 21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6. 2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건물부문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비중은 25.2%이며, 총 에너지소비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분야임. 2020년까지 26.9%를 감축토록 한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동시에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강화를 위해서는 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전라북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안 제5조)
- 나.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과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등을 시범사업으로 지정 (안 제8조)

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제 출 자	최영규 의원 외 8인		제 출 일 자	2016. 5. 30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6. 1
	의 결 일 자	2016. 6. 1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6. 21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6. 2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고,
-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서로 나누어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을 고취하여 지역사회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 제정이 필요하게 됨

□ 주요내용

- 가. 도민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공공의 선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이념을 정하고, “재능 기부”의 용어를 정의함
- 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 등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책무를 규정함
- 다.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라. 재능기부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마.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시공을 위한 조례안

제 출 자	양용모·장명식·최인정·이해숙·정호영 조병서·황현 의원 외 2인		제 출 일 자	2016. 5. 30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6. 1
	의 결 일 자	2016.6.1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6. 21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6. 23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전라북도교육감 소관 각급 교육기관 시설공사의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및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나. 교육시설 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책사항과 교육감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안 제5조)
- 다. 교육시설의 부실점검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라. 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 등의 사항을 정함(안 제8조~제15조)
- 마. 부실시공 신고센터 설치, 기능, 포상금 등의 사항을 정함(안 제17~제21조)
- 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현장설명회 사항을 정함(안 제22조~제23조)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국주영은양용모 의원 외 9인		제 출 일 자	2016. 5. 30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6. 1
	의 결 일 자	2016. 6. 1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6. 21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2. 23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정보화의 기본 방향 설정과 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 교육 정보화에 따른 정보화 역기능예방의 적용 대상을 저소득층 학생 지원 컴퓨터에서 학교 내 학생용 모든 컴퓨터까지 확대하는 한편
- 최우수 제품의 선정 및 품질 유지, 성인·불법 게임의 이용 제한, 개인정보 보호, 중복된 항목 삭제 등 조례의 내용과 체계를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전라북도교육청 정보화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정보화로 인해 발생하는 역기능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안 제1조)
- 나. 적용 대상을 저소득층 학생에서 전라북도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으로 확대 함 (안 제4조)
- 다. 정보화시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 방향 등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마련 함(안 제5조와 제6조)
- 라. 정보화추진과 역기능예방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위원회 운영(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 마.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관리와 사이버음란물 차단 등을 규정함(안 제12조와 제13조)
- 바.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지원과 인터넷사업자 변경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14조와 제15조)
- 사. 직무수행 전문성 향상을 위해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지정 등” 조항을 신설함(안 제18조)

영유아 전자파 보호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박재완 의원 외 11인		제 출 일 자	2016. 5. 30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6. 1
	의 결 일 자	2016. 6. 13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6. 21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6. 23		이 송 기 관	청와대등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정부는 영유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신설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전자파 취약구역으로 설정·관리하는 등 영유아 전자파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주요내용

- 가. 6천만여개에 이르는 무선기지국과 와이파이 공유기 등 무선기기의 보급 확대로 전자파에 대한 인체 노출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음
- 나. 특히 전자파에 취약한 영유아들이 생활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경우 주변의 무선기지국으로부터 자연 노출되어 있어 국민들의 염려가 높음
- 다. 전 세계적으로도 전자파의 위해성에 대한 보고가 많아지면서 전자파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로 이어지고, 영유아 등 전자파 취약계층에 대한 인체보호기준을 강화하는 국가도 증가하고 있음
- 라. 일반성인 기준으로 규정된 국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에서 영유아에 대한 별도의 기준 신설과 전자파 안전대책이 요구됨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폐과계획 반려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이상현·강용구 의원 외 31인		제 출 일 자	2016.6.14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6. 21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6. 23		이 송 기 관	청와대 등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교육부는 지난 6월 7일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을 폐과하고 2018년부터 남원 캠퍼스를 평생교육원으로만 활용하겠다는 서남대학교 구(舊)재단의 정상화 계획을 발표했다
- 이는 사학비리를 바로잡고 대학의 정상적 운영을 지도·감독해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횡령을 반복해온 설립자를 옹호하는 행태로 서남대 정상화가 아닌 서남대 폐교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음
- 이에, 전라북도의회에서는 교육부가 구(舊)재단의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폐과 계획을 반려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임

□ 주요내용

- 가. 교육부는 서남대학교 舊재단의 의과대학 폐과계획을 반려하라.
- 나. 박근혜 정부는 모든 국민이 보편적이고 형평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균형적인 의료복지정책을 위해 서남대학교 정상화방안을 진중하게 모색하라.

지역무역항 몰락시키는 항만 카보타지 시행계획안 철회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박재만 의원 외 17인		제 출 일 자	2016. 6. 17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6. 21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6. 23		이 송 기 관	청와대 등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최근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암묵적으로 허용해 오던 항만 카보타지를 엄격 적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선박 이외 선박의 국내항간 화물 운송금지」 방침을 내부적으로 결정함
- 정부의 갑작스런 방침으로 지역무역항 특히 서해안권 무역항 수출물동량의 8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환적화물을 전면 취급할 수 없게 됨으로써 지역무역항은 물론 지역경제전반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됨
- 그러면서도 해양수산부는 광양항을 국제 환적화물 허브기지로 조성하겠다는 명목으로 광양항에 한하여 3년간 항만 카보타지를 적용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일관성과 형평성을 상실한 지역편애정책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음
-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지역경제성장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무역항의 활로를 가로막는 항만 카보타지 적용 및 광양항 환적화물 허브기지화 계획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전라북도의회는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지역경제성장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무역항의 활로를 가로막는 항만 카보타지 적용 및 광양항 환적화물 허브기지화 계획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대 국회, 전북현안 해결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양용호 의원 외 7인		제 출 일 자	2016. 6. 2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6. 21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6. 23		이 송 기 관	청와대 등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원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시점에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이 추진되길 기대하며,
- 전북지역 현안과 관련한 국회와 각 정당에 전라북도 현안 해결 촉구와 함께 특히, 20대 국회가 전라북도는 물론이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사회적 약자의 지위향상, 사회정의 실현 등을 위해 앞장서 줄 것을 기대하고,
- 아울러,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걷어내고, 정치가 국민의 아픔을 위로 하고, 사회적 불평등과 모순을 해결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판단되기에,
- 또한, 20대 국회가 국민의 삶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현안부터 앞장서 해결해 새로운 정치, 새로운 국회의 상을 실현해 줄 것과 전북현안 해결을 강력히 촉구함.

□ 주요내용

- 가. 수많은 학부모와 보육관계자 등이 고통 받고 있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문제 해결과 ‘맞춤형 복지’ 정책 폐지
- 나. 대형마트 등 유통재벌의 지역상권 장악을 견제하고,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 다. 전북의 성장 기반으로 여야 3당이 약속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온전한 전북이전을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 등 법적조치 필요
- 라. 새만금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

IV.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

1. 2016년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횟수별)

(2016. 1. 1 ~ 2016. 6. 21)

기관별		구 분	요 구	제 출	미제출	비 율(%)	비 고
계	금 회		27	27	0	100	
	누 계		249	249	0	100	
도	금 회		22	22	0	100	
	누 계		206	206	0	100	
교육청	금 회		5	5	0	100	
	누 계		43	43	0	100	

2. 2016년 위원회별 요구상황(횟수별)

(2016. 1. 1 ~ 2016. 6. 21)

기관별		구 분	계	운 영	행 정 자 치	환 경 복지	산 업 경 제	문화관 광 건 설	교 육	특 별
계	금 회		27	0	6	8	2	3	8	0
	누 계		249	0	52	46	15	48	88	0
도	금 회		22	0	6	6	2	3	5	0
	누 계		206	0	49	41	15	47	54	0
교육청	금 회		5	0	0	2	0	0	3	0
	누 계		43	0	3	5	0	1	34	0

3. 제10대 의회 의원 요구 및 제출현황(횟수별)

(2014. 7. 1 ~ 2016. 6 21)

구 분	요 구	제 출	미제출	비 고
합 계	1455	1455		
전라북도	1083	1083		
교 육 청	372	372		

4. 제10대 의회 위원회별 요구상황(횟수별)

(2014. 7. 1 ~ 2016. 6 21)

구 분	계	운 영	행정자치	환경복지	산업경제	문화관광 건설	교 육	특 별
합 계	1482	0	372	194	146	273	485	12
전라북도	1105	0	339	179	135	254	194	4
교 육 청	377	0	33	15	11	19	291	8

5. 제10대 의회 위원회별 요구상황(건수별)

(2014. 7. 1 ~ 2016. 6 21)

구 분	계	운 영	행정자치	환경복지	산업경제	문화관광 건설	교 육	특 별
합 계	5128	0	1557	535	678	768	1432	158
전라북도	4248	0	1470	505	644	695	875	59
교 육 청	880	0	87	30	34	73	557	99